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7-174호 정선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2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7-1049호 정선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5
- 정선군 공고 제2017-1050호 정선군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4
- 정선군 공고 제2017-1051호 2017년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 공고.....24
- 정선군 공고 제2017-1052호 2017년도 가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공고.....26

고 시

정선군고시 제2017-174호

정선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0월 20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남면 무릉리 일원 증산초교 앞 증산 제2공원(문화공원)내 민둥산 등산객 등 주변 관광객의 증가로 공원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화장실, 주차장 등 공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공원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 하고자 함.

나. 위 치 : 정선군 남면 무릉리 800-1번지 일원

다. 면 적 : 13,846㎡(변경 없음)

라.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마.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증산 제2공원	문화 공원	남면 무릉리 800-1번지 일원	13,846	-	13,846	강원도고시 제228호 (2010.07.23)	

바.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증산공원

(가)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846	—	13,846	100.0	
공원시설	9,883	증)230	10,113	73.0	
녹 지	3,963	감)230	3,733	27.0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건축규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846	-	13,846	100.0	701	감)400	301	701	감)400	301	시설율 : 73.0%
공원시설	소계	9,883	증)230	10,113	73.0	701	감)400	301	701	감)400	301	
	교양 시설	181	감)181	-	-	181	감)181	-	181	감)181	-	
	조경 시설	2,652	감)34	2,618	18.9	-	-	-	-	-	-	친수공간
	편익 시설	1,926	증)1,451	3,377	24.4	520	감)219	301	520	감)219	301	주차장, 특산물 매점, 부속시설(저 온저장고), 화장실
	휴양 시설	2,387	감)45	2,342	16.9	-	-	-	-	-	-	파고라, 정자, 연세마당, 잔디블럭
	기반 시설	2,737	감)961	1,776	12.8	-	-	-	-	-	-	도로(보도), 광장
녹 지		3,963	감)230	3,733	27.0	-	-	-	-	-	-	

(다) 공원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건축규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846	-	13,846	100.0	701	감)400	301	701	감)400	301	
공원 시설	교양 시설	역새체험장	181	감)181	-	-	181	감)181	-	181	감)181	-	
	조경 시설	소 계	2,652	감)34	2,618	18.9	-	-	-	-	-	-	
		조형물	34	감)34	-	-	-	-	-	-	-	-	
		친수공간	2,618	-	2,618	18.9	-	-	-	-	-	-	
	편익 시설	소 계	1,926	증)1,451	3,377	24.4	520	감)219	301	520	감)219	301	
		주차장	1,406	증)1,362	2,768	20.0	-	-	-	-	-	-	
		특산물 매점1	210	증)231	441	3.2	210	-	210	210	-	210	
		특산물 매점2	269	감)269	-	-	269	감)269	-	269	감)269	-	
		특산물매점 부속시설	10	-	10	0.1	10	-	10	10	-	10	
		화장실	31	증)127	158	1.1	31	증)50	81	31	증)50	81	
	휴양 시설	소 계	2,387	감)45	2,342	16.9	-	-	-	-	-	-	
		파고라	157	감)45	112	0.8	-	-	-	-	-	-	
		정자	139	-	139	1.0	-	-	-	-	-	-	
		역새마당	1,844	-	1,844	13.3	-	-	-	-	-	-	
		잔디블럭	247	-	247	1.8	-	-	-	-	-	-	
	기반 시설	소 계	2,737	감)961	1,776	12.8	-	-	-	-	-	-	
		도로 및 광장	2,737	감)961	1,776	12.8	-	-	-	-	-	-	
녹 지			3,963	감)230	3,733	27.0	-	-	-	-	-	-	

사.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변경 없음) : 실음생략

아. 공원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비치)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7-1049호

「정선군 상징물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를 정비하며, 정선군이 후원하는 행사와 사업에 대한 사용료 면제사항을 추가하고
- 상징물의 사용신청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행정절차상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변경 : 「정선군 상징물 조례」 →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 지정 매뉴얼에 따른 사용 규정(안 제5조)
- 사용료 면제 사항 개정(안 제8조제2항제1호)
 - 군이 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 일부 사용신청 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추가(별지 제1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 확인 동의
-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법제처 협업과제) 정비
 - 관련법률 위반사항 조치 규정 삭제(안 제11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휘 정비

3. 입법예고기간: 2017. 10. 17. ~ 2017. 11. 6.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기획감사실
- 전 화: 033-560-2125
- 팩 스: 033-560-2592
- 이 메 일: lrbiyond@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정선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상징물 조례”를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상징물 관리 매뉴얼의 관련 규정에 따라”를 “지정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승인사항 변경시에 는”을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선군”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선군”으로, “승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승인서”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관하여 실행하는”을 “주관하거나 후원하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 상징물 조례</u>	<u>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u>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u>각호</u> 와 같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 ----- <u>각 호</u>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제5조(상징물 관리 등) ① (생략)	제5조(상징물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 제4호, 제8호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u>상징물 관리 매뉴얼의 관련 규정에 따라</u> 사용하여야 한다.	② ----- ----- <u>지정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u> ----- -----.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u>각호</u> 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 ----- <u>각 호</u>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 제4호, 제8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u>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u> 를 제출하여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 ----- ----- ----- ----- <u>별지 제1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u> ----- -----.

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 변경시에는 첨부자료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료 부터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정선군 상징물 사용 승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8조(사용료) ① (생 략)

②군수는 다음 각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실행하는 경우

2. ~ 4.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제11조(위반사항 조치) 군수가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 및 제2호,

②-----

----- . --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
- .

③-----

- 별지 제2호서식의 정선군 -- 승인서-----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
----- .

1. -----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

2.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 각 호-----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u>제4호, 제8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u>	
---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상징물 사용 ☐ 승인 ☐ 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상 호(단체명)		
	대표자(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사용(변경)목적			
※ 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상징물()의 사용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 서류	제 출 서 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 사용계획서 ☐ 사업자 등록증(해당되는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뒷면)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취소)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수집항목]

- 회사명(단체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FAX),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사항, 사용계획서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업무 처리에 활용되며 민원인이 제공한 모든 정보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취소)가 완료된 이후 1년간 보유합니다.

4.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처리 및 보유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관련법령(「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17-1050호

「정선군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를 정비하며, 정선군이 후원하는 행사와 사업에 대한 사용료 면제사항을 추가하고
- 2017년 하반기 조직개편(2017. 7. 1.)으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일부 상징물의 관리 부서를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명변경 : 「정선군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사용료 요율 표기법 변경(안 제3조제1호)
 - 10/1,000 → 1/100
- 상호협약의 체결 사항 규정(안 제4조)
 -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시기 및 방법을 상호협약에 의해 정함
- 사용승인 범위 개정(안 제6조제2항제3호)
 - 그 밖에 상징물의 목적 및 품위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선군 생약초공동브랜드 관리부서 변경(안 제7조제1항제3호)
 - 농업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휘 정비

3. 입법예고기간: 2017. 10. 17. ~ 2017. 11. 6.

4.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기획감사실

○ 전 화: 033-560-2125

○ 팩 스: 033-560-2592

○ 이 메 일: lrbiyond@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정선군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을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정선군 상징물 조례」”를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정선군 상징물 조례」”를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1,000”을 “1/100”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상호협약의 체결) 상징물의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의 상호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범위를 다음 각호의 사항에 준한다”를 “상징물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의 상징물의 목적 및 품위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징물 종류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농업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례 제3조제1호, 제2호 : 별지 제1호서식 정선군 심벌마크(마스코트) 사용승인대장

2. 조례 제3조제4호 : 별지 제2호서식 정선군 생약초공동브랜드 사용승인대장

3. 조례 제3조제8호 : 별지 제3호서식 정선군 브랜드슬로건 사용승인대장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시행규칙은 정선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u>	<u>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상징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
제2조(사용승인) ① 「정선군 상징물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승인) ①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사용료) ----- ----- <u>각 호</u> -----.
1.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 제4호, 제8호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 판매할시 상품 1점당 판매할 금액의 <u>10/1,000</u> 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 ----- ----- <u>1/100</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u>제4조(사용료의 납부기간) 사용자</u>	<u>제4조(상호협약의 체결) 상징물의</u>

는 사용승인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승인 범위) ①조례 제3조 제1호 및 제2호, 제4호, 제8호의 사용범위를 다음 각호의 사항에 준한다.

1. 2. (생략)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다.

1. 2. (생략)

3. 기타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①상징물 종류별 관리부서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2. (생략)

3. 정선군 생약초공동브랜드 : 농업축산과

4. 5. (생략)

②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조례 제3조제1호, 제2호를 사용승인한 경우에는 사용승인대장(별표1)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 방법 등의 상호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승인 범위) ①-----
----- 상징물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현행과 같음)

②-- 각 호-----
-----.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상징물의 목적 및 품위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①상징물 종류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 (현행과 같음)

3. ----- 농업기술센터

4. 5. (현행과 같음)

② -----
----- 각 호-----
-----.

1. 조례 제3조제1호, 제2호 : 별지 제1호서식 정선군 심벌마크(마스코트) 사용승인대장

<u>다.</u> <u>2.조례 제3조제4호의 경우 별표 4</u> <u>의 서식에 의거 관리한다. <전</u> <u>부개정 2006.09.30.></u> <u>3.조례 제3조제8호의 경우 별표 5</u> <u>의 서식에 의거 관리한다.</u>	<u>2. 조례 제3조제4호 : 별지 제2호</u> <u>서식 정선군 생약초공동브랜드</u> <u>사용승인대장 <전부개정 2006.0</u> <u>9.30></u> <u>3. 조례 제3조제8호 : 별지 제3호</u> <u>서식 정선군 브랜드슬로건 사용</u> <u>승인대장</u>
---	--

[별지 제2호서식]

정선군 생약초공동브랜드 사용승인대장

[illegible]

[별지 제3호서식]

정선군 브랜드슬로건 사용승인대장

[illegible]

정선군 공고 : 제2017-1051호

2017년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 공고

2017년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정 선 군 수

1. 모집인원 : 72명(정선군청 환경산림과 25명, 고한읍 5명, 사북읍 5명, 신동읍 8명, 화암면 6명, 남면 6명,

여량면 5명, 북평면 5명, 임계면 7명)

2. 종사업무 : 산불예방 활동 및 진화, 기타 산림사업 등

3. 근무기간 : 본청 및 읍·면 : 가을철 2017. 11. 1. ~ 12. 15. (배치기간은 기상상태 등 정선군 사정에 따라 조정)

4. 모집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체력검정 포함)

5. 응시자격

가. 모집공고일(2017년 10월 17일) 현재 정선군내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이 정선군으로 되어 있는 신체 건강하고 야간 산불

등 비상 시 대비 각 근무지(정선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무실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20분 내 소집 가능한 자.

나.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군복무를 필(면제)한 자

6. 진화대원 모집일정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본청 및 읍·면 (2017. 10. 17. ~ 2017. 10. 23.)

- 시험구분 : 면접시험, 체력검정

- 시험장소 :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시험일자 : 본 청 : 2017. 10. 25(수) 10:00 ~

읍·면 : 2017. 10. 25. (해당 읍·면 산업개발팀에 문의)

- 대상자 확정발표 : 본 청 : 2017. 10. 26(목)

읍·면 : 2017. 10. 26. (해당 읍·면 산업개발팀에 문의)

7. 대상자 확정발표 : 개별통보

8. 확정 대상자 처우 : 정선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으로 채용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

-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산림보호팀 (전화 560-2157)

- 고한읍사무소(560-2614), 사북읍사무소(560-2624), 신동읍사무소(560-2634), 화암면사무소(560-2644),

남면사무소(560-2654), 여량면사무소(560-2664), 북평면사무소(560-2674), 임계면사무소(560-2684)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본인이 접수처에 직접 제출

(타 지역 원서접수 불가)

10.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 1통(소정양식) -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부착

나. 이 력 서 : 1통

다. 주민등록등본 : 1통

라. 채용신체검사서 : 1통(예외 사항없음)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1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부담입니다.

다. 본 모집공고 계획은 우리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별도 공고)

라. 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선군 환경산림과 산림보호팀 및 해당 읍·면 산업개발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마.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될 시 선발을 취소한다.

바. 응시자격요건에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끝.

정선군 공고 : 제2017-1052호

제 목 : 2017년도 가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 공고

2017년도 가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정 선 군 수

1. 모집인원 : 90명(정선읍 13명, 고한읍 5명, 사북읍 5명, 신동읍 10명, 화암면 12명, 남면 12명, 여량면 9명, 북평면 9명, 임계면 15명)
2. 종사업무 : 산불예방 활동 및 감시, 산불진화, 각종 산림사업 등
3. 근무기간 : 가을철 2017. 11. 1. ~ 2017. 12. 15.(배치기간은 기상상태 등 정선군 사정에 따라 조정)
4. 모집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5. 응시자격 : 모집공고일(2017년 10월 17일) 현재 정선군내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이 정선군으로 되어 있는
신체건강하고 야간산불 등 비상 시 대비 각 근무지(해당 읍·면사무소)에 20분 내 소집 가능한 자.
6. 대상자 확정발표 : 2017. 10월 중 해당 읍·면별 개별통보
7. 확정 대상자 처우 : 해당 읍·면 산불유급감시원으로 채용(1일 임금 52,000원)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2017. 10. 17. ~ 10. 23.
- 정선읍사무소(560-2604), 고한읍사무소(560-2614), 사북읍사무소(506-2624), 신동읍사무소(560-2634),
화암면사무소(560-2644), 남면사무소(560-2654), 여량면사무소(560-2664), 북평면사무소(560-2674)

소(560-2674),

임계면사무소(560-2684)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접수처 제출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 1통(신청자 직접방문 후 작성) -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부착

나. 이 력 서 : 1통

다. 주민등록등본 : 1통

라. 채용신체검사서 : 1통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부담입니다.

나. 본 모집공고 계획은 우리 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별도 공고).

다.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위치관제단말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선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선군 환경산림과 산림보호팀 및 해당 읍·면 산업개발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마.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될 시 선발을 취소한다.

바. 응시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끝.